

법과대학 고시반운영위원회 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시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고시반운영위원회는 학장 및 고시지도교수, 헌법, 행정법, 형법·형사소송법, 민법·민사소송법, 경제법·국제법, 노동법·법철학을 대표하는 전공교수들로 구성된다.

②학장 및 고시지도교수는 각 전공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③고시반운영위원의 선발은 학장 및 고시지도교수가 상의하여 위촉한다.

제 3 조 (기능) ①고시반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
1. 고시반 연간 모의고사 및 특강프로그램
2. 고시반 예산 편성 및 집행
3. 기타 고시반 운영과 관련하여 고시지도교수가 보고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조 (소집) 고시반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된다.

제 5 조 (고시운영위원의 임기 및 의무) ①고시반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고시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, 각 전공별 외부특강교수 초빙 및 내부특강, 기타 수험정보 개발 등에 있어서 고시지도교수에 협조한다.

제 6 조 (비용) 고시반운영위원회의 비용은 고시반비용으로 충당한다.

제 7 조 (규정의 개정제안 및 의결) 규정의 개정은 고시지도교수의 발의로 제안하며, 고시반운영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